

[]제조소
[]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설치허가의 경우: 30일 변경허가의 경우: 20일
검토번호	검토일자		
설치자	성명		
	주소 (전화번호 :)		
설치장소			
위험물의 유별·품명 (지정수량) 및 최대수량		지정수량의 배수	배
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			
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개요			
위험물의 저장·취급 방법의 개요			
착공예정 연월일	년 월 일	완공예정 연월일	년 월 일
그 밖의 사항			
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

(전화번호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 (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
------	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

-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
 -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
 -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의 배치(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)
 -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의 구조(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)
 -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, 피뢰설비, 소화설비,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
 - 압력안전장치·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
-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 구조설비명세표
- 소화설비(소화기구는 제외합니다)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
-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

작성방법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포함)을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.
-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